

의안번호	2203995
의 퇴 인	김교홍 의원
회 답 일	2024. 11. 25.
추계번호	24A38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화재경보기 및 LED비상조명)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4억 7,200만원, 2029년 13억 6,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1억 600만원(연평균 14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1,472	1,395	1,422	1,451	1,366	7,106	1,421

주: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 및 제2항 ¹⁾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지상에 위치하여야 함. 다만, 기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여야 함	의무규정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
2	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경우에도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도록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²⁾ 및 이행강제금 ³⁾ 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존 충전 시설 중 일부를 주차장 출입구 근처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므로, 재설치 및 이동설치에 따른 재정지출 발생 가능 다만,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설치되지 않아 이동이 필요한 충전시설의 개수를 알 수 없으며, 재설치 및 이동설치에 따른 단가도 기존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대수, 건물 구조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상이할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외에, 본 추계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 및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예시된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중 화재알림설비 및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으로 함
 - 화재알림설비의 경우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 및 LED비상조명 알람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여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연기 감지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 화재알림설비와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는 대상 시설별로 추계기간 동안 1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국가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지원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지 않았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⁴⁾를 적용
- 개정안 부칙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11.)

(단위: %)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부칙에서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에 충전시설당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설치 단가를 곱하여 추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는 각 연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총량 추정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비중을 곱하여 추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총량은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를 바탕으로 추정하며, 설치 목표가 공개된 2023년, 2025년, 2027년 및 2030년을 기준으로 그 외의 연도(2024년, 2026년, 2028, 2029년)는 선형보간법을 활용하여 추정
 -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25년 59만기, 2027년 85만기, 2030년 123만기가 보급될 계획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정: 2023~2030년

(단위: 만기)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실적	추정	계획	추정	계획	추정	추정	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1	45	59	72	85	98	110	12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및 관계부처 합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 6. 2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환경부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7월 누적 기준인 2.5%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운영주체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2024년 7월말 기준)

(단위: 기, %)

운영주체		규모	비중
	국가(환경부)	8,422	2.3
	지방자치단체	1,068	0.3
소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490	2.5
	한국전력	10,916	2.9
	민간 등 기타	353,555	94.5
소계(민간)		364,471	97.5
합 계		373,961	100.0

주: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록 기준
 2.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환경부

- 이에 따라 추계기간 동안 신규 설치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총량은 2025년 14만기, 2029년 12만기 등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의 신규 설치분은 2025년 3,553기, 2029년 3,045기 등으로 추계

[표 4] 운영주체별 신규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 추계: 2025~2029년

(단위: 기)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신규 설치 충전시설 수	140,000	130,000	130,000	130,000	120,00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553	3,299	3,299	3,299	3,045
민간 ¹⁾	136,447	126,701	126,701	126,701	116,955

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한국전력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을 말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각 소방시설의 단가는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의 경우 13만 2,000원,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의 경우 26만 4,000원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검색 결과, 2023년 기준 화재알림설비 단가는 132,000원⁵⁾,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단가는 264,000원⁶⁾으로 추정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230901507-00, '2023년 안전취약계층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구매')에 따르면 화재알림설비(비상라이트: 화재경보기/LED비상조명등) 4,510개 구입에 595,320,000원이 입찰금액임

[표 5]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 단가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화재알림설비 설치 단가	138	141	144	147	151
소화기 설치 단가	277	283	289	295	3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된 대상 시설 수에 단가를 곱하면, 신규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에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따른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1억 600만원(연평균 14억 2,1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의 비용 중 국가 부담분은 63억 600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8억원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소방시설 설치 비용(합계)		1,472	1,395	1,422	1,451	1,366	7,106	1,421
소방시설 유형별	화재알림설비	491	465	474	484	455	2,369	474
	소화기	982	930	948	967	911	4,737	947
설치·운영 주체별	국가	1,307	1,238	1,262	1,288	1,212	6,306	1,261
	지방자치단체	166	157	160	163	154	800	160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2023.6.29.)의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충전시설 보급 실적에 따라 실제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6)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입찰공고(입찰공고번호: 202304116267-00,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전용 소화기 구매')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31개 구입에 8,184,000원이 입찰금액임

- 비용추계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충전 시설별로 설치 필요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개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소방시설 설치 실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에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